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2005. 9. 13.

장 근 호

개 요

- 일시 : 2005. 9. 13(화) 16:00~18:00
- 장소 : 한국조세연구원 10 대강당
- 진행순서 :

16:00~16:10 개회사

- ▶ 개회사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6: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신현배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상호 세종대학교 교수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

(가나다 순)

17:40~18:00 개설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 회

목 차

I. 서론	1
II. 주세율 체계와 주류소비 현황	2
1. 주세율 체계와 세부담	2
가.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	2
나. 주세 세수의 변화	5
2. 주류 출고 및 소비 동향	8
가. 출고량의 변화 추이	8
나. 주류 소비량: 국제비교	9
III. 우리나라 음주성향 및 그 폐해	11
1. 우리나라 음주행태와 습관	11
가. 음주성향과 과음	11
나. 청소년 음주	16
2. 왜곡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비용	18
가. 과다음주로 인한 피해	18
나.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	21
IV.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25
1. 주세율 개편시 고려사항	25
가. 수요 탄력성	25
나. 주종별 세금부담: 국제비교	27
다. 주세의 과세방식	32
라. 최적세율이론과 주세율	35
2.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39
가. 주세율 체계의 개편 필요성	39
나.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41
다. 주세와 건강복지기금	44
V. 요약 및 결론	46

표 목 차

<표 II-1> 주류 관련 세율 체계	2
<표 II-2> EU 국가들의 주종별 세금 비교(2001년)	4
<표 II-3> 연도별 주세 세수(1970~2003)	6
<표 II-4> EU 국가들의 1인당 주세 부담(2000년 기준)	7
<표 II-5> 연도별 주종별 총 출고량과 1인당 출고량(15세 이상)	8
<표 II-6> 인구 1인당 주류 소비: 국제비교(1997~2002)	10
<표 III-1> 20세 이상 인구 음주비율(1992~2003)	11
<표 III-2> 20세 이상 인구 음주 빈도수(2003)	12
<표 III-3> 자주 마시는 주종과 평균 음주량 및 음주횟수	13
<표 III-4> 20세 이상 인구 1회 소주 음주량(1999~2003)	14
<표 III-5> 20세 이상 인구 1회 맥주 음주량(1999~2003)	15
<표 III-6> 성인 음주자의 알콜 의존도	16
<표 III-7> 청소년 인구 음주비율(12~19세)	16
<표 III-8> 주요 국가별 음주 관련 질환 및 사망률	19
<표 III-9>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자	20
<표 III-10> 음주로 인한 총비용과 사회적 비용(1995년)	22
<표 III-11>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제비교	24
<표 IV-1> 주류의 수요 탄력성: 국제비교	25
<표 IV-2> 소매가격 대비 주세부담율: 국제비교	28
<표 IV-3> 주종별 소매가격: 국제비교(달러가격 및 GDP 대비 비중)	30
<표 IV-4> 국가별 고유 주류와 유사 주종의 가격 비교	31
<표 IV-5> 종가세와 종량세의 특성과 장단점 비교	32
<표 IV-6> 미국 연방정부 주세율과 실질 세부담(1992~2001)	33
<표 IV-7> 미국 주정부 평균 주세율과 실질 세부담(1966~2001)	34
<표 IV-8> 영국 주세율의 실질 세부담(2000년 3월=100)	34
<표 IV-9> 알콜도수에 따른 주종별 최적 주세율(대체 탄력성=0)	38
<표 IV-10>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43

I. 서론

- 적절한 수준의 음주는 일반 제품의 소비와 다를 바 없으나 우리나라 음주행태는 후진국형으로 그 폐해가 심각
 - 권주와 1,2,3차를 강조하는 집단음주와 고도주를 중심으로 한 폭주가 성행하며 음주소란 등 과음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대한 문화
 - 선진국은 반대로 음주의 자유와 음주 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문화
 -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개인의 획일화와 집단화 그리고 공공질서 문란을 초래하여 선진경제의 바탕이 되는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알콜중독, 가정폭력, 음주운전, 생산성 하락과 각종 사고 질병 및 범죄 유발

- 특히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 음주가 증가하는 등 음주인구가 확산되면서 그 폐해가 증대되는 경향
 - 선진국에서도 최근 과다 음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
 - 미국 국립학술원은 주세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음용하는 맥주 과세 강화를 의회에 권고하고 EU 각료회의도 이를 위한 실행조치 마련을 선언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음주행태의 문제점, 국제비교 그리고 과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경제 등을 고려하여
 -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창달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을 논의
 - 그러나 적정 음주는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지 않는 사실도 함께 감안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류 소비에 대한 과세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하고 보다 적은 왜곡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정책 수단
 - 특히 음주는 습관성·중독성 소비이므로 현 세대의 음주문화를 후세대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세율 정책 본연의 기능을 강화
 - 서민주라는 이름으로 저율⁻¹⁻ 과세되어 음주인구와 과음행태가 확산되고 그 결과 서민주의 위치를 다시 공고히 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필요

II. 주세율 체계와 주류소비 현황

1. 주세율 체계와 세부담

가.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

- 현행 주종별 주세율은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72%, 맥주 90%(2006년 72%), 과실주와 청(약)주 30% 그리고 탁주 5%이며
 - 이외 대부분의 주종에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탁·약주는 무세, 청주 및 과실주는 10%)

		<표 II-1> 현행 주류관련 주세율 체계					
		알콜도수	주세 57,000	교육세	관세	(단위: %, 원, 도) CIF 대비 원가 ⁴	
증류주	주종 주정 소주						
	- 증류식	40	72	30	30		
	- 회석식	21~25	72	30	30		
	위스키	40	72	30	20	232.3	
	브랜드	40	72	30	15	222.6	
	일반증류주	40	72	30	20	232.3	
	리큐르	35	72	30	20	232.3	
	탁주	6	5	-	15		
발효주	약주	11	30	-	15		
	청주	16	30	10	15	153.0	
	과실주	12	30	10	15	153.0	
	맥주	4~5	90 ²	30	30	282.1	
	기타주류						
	- 발효주		30	10	15	153.0	
	- 기타 ¹		72	30	30		

주: 1. 발효주나 증류주의 혼합 혹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 2. 맥주는 2006년 80%, 2007년 72%로 인하 예정 3. 과세기준에 있어서 관세는 CIF 가격 기준, 주세는 관세 포함, 교육세는 주세액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각종 세금 포함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 포함 시 수입 CIF 가격 대비 비율(하역비 등 부대경비는 제외)

자료: 국제통계연감 및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 따라서 원가 대비 소주와 위스키 주세율은 93.6%(부가세 포함 113%)
 - 맥주는 117%(부가세 포함 138.7%)이며 2007년에는 소주와 증류주 그리고 맥주 등 주요 주종 모두에 같은 세율이 부과(포도주는 33%(46.3%))

- 소주와 위스키 그리고 맥주 등 주요 주종에 동률의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하는 현행 세율체계는
 -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 원칙이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어긋나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립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
 -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증류주에 대하여 주세 세율을 90%로 인상할 예정: 이 경우 증류주와 맥주 세율은 2007년에 역전

- <표 II-2>에 나타난 유럽 국가의 주종별 주세부담을 보면 국가별로 큰 편차가 존재
 - 프랑스 등 포도주 생산 국가들은 포도주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이에 따라 맥주와 증류주 세율도 낮고 그 결과 1인당 음주량이 많은 편¹⁾
 - 반면 북유럽 및 인접국가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주세율은 높은 편

- 유럽국가 증류주 세율은 알콜 1리터당 평균 21.1유로이며 증류주 세율을 기준하면 주종별 상대적 세부담은 맥주 40, 포도주 32에 해당
 - 포도주에 대하여 비(저율) 과세하는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맥주세율도 증류주의 10% 수준

- 그러나 이들 비과세 국가를 제외한 유럽 평균을 보면 증류주 세율은 약 34유로로 맥주와 포도주 세부담이 증류주의 약 43%에 상당²⁾
 - 상대적으로 맥주와 포도주에 중과하는 국가는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이들 국가는 증류주 대비 60~70%의 세율을 부과
 - 이외 국가들은 증류주 세금의 20~50%를 맥주와 포도주에 과세하는 데 핀란드는 맥주세율이 포도주 세율보다 높고 스웨덴은 정반대
 - 이 밖의 국가들에서는 맥주와 포도주의 세부담이 서로 비슷

1) 포도주 생산 국가의 경우 생수 대신 맥주와 포도주를 음용하는 습관으로 세율이 낮은 편
 2) 증류주가 알콜 1리터당 34 유로일 때 단순히 알콜도수만 고려하면 맥주는 약 3.8유로, 포도주는 약 10.6 유로 과세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맥주 3.9배, 포도주는 1.4배 중과

<표 II-2> EU 국가들의 주종별 세금 비교(2001년)

(단위: 유로, %)

	맥주			포도주			증류주	
	리터당	알콜리터	비율 ¹⁾	75cl	알콜리터	비율 ¹⁾	70cl	알콜리터
오스트리아	0.26	5.20	52	0.00	0.00	0	2.81	10.03
벨기에	0.21	4.28	26	0.35	3.77	23	4.65	16.61
덴마크	0.46	9.28	25	0.71	7.57	21	10.33	36.89
핀란드	1.43	28.59	57	1.77	18.84	37	14.13	50.46
프랑스	0.13	2.59	18	0.03	0.27	2	4.06	14.50
독일	0.10	1.98	15	0.00	0.00	0	3.65	13.04
그리스	0.14	2.83	31	0.00	0.00	0	2.54	9.08
아일랜드	0.99	19.87	72	2.05	21.84	79	7.73	27.62
이탈리아	0.18	3.50	54	0.00	0.00	0	1.81	6.45
룩셈부르크	0.10	1.98	19	0.00	0.00	0	2.92	10.41
네덜란드	0.21	4.26	28	0.37	3.90	26	4.21	15.04
포르투갈	0.14	2.89	35	0.00	0.00	0	2.34	8.36
스페인	0.10	1.93	28	0.00	0.00	0	1.92	6.85
스웨덴	0.86	17.24	29	2.39	25.52	43	16.46	58.80
영국	0.99	19.85	61	1.93	20.61	63	9.14	32.65

유럽 전체 - 8.4 40 - 6.8 32 - 21.1
 7개국 평균²⁾ - 14.8 43 □□ 14.6 43 - 34.0
 우리나라³⁾ - 15.9 46 - 11.0 32 - □□4.9(3.2)⁴⁾

주: 1) 비율은 증류주 세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상대적 비율 2) 포도주를 과세하는 유럽 국가 기준 3) 출고가액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 세금을 역산 4) 팔호 안은 소주 세금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04(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publications/info_doc/taxation/excise_tables)

- 이처럼 포도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준수되고 있지만
 - 포도주와 맥주 세 부담이 증류주의 절반에 육박하여 알콜도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 또한 포도주와 맥주 사이의 세 부담이 비슷한 국가도 상당수 존재

- 우리나라 주세 부담을 보면 알콜 1리터당 대략 위스키 35유로(소주 3.2유로), 맥주 16유로 그리고 포도주 11유로에 해당3)
 - 절대금액으로 보면 위스키는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이외 여타 국가보다 세 부담이 큰 편인데 그 대신 소주 세 부담은 극히 낮은 편
 - 맥주의 경우 포도주를 과세하는 유럽 국가와 세부담이 유사하고 포도주는 약간 낮은 편
 - 다만 이러한 주세 부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수치로 평균 19.2%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유럽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

- 우리나라 주세의 상대적 세부담은 위스키 100 기준으로 소주 9, 맥주 46, 포도주 32
 - 포도주 과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 세 부담은 맥주는 유사하고 포도주는 낮은 편

나. 주세 세수의 변화

- 2003년 당시 주세 수입은 약 2조 7,262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0.4%, 국세 대비 비중은 2.4%에 상당(실적 기준)
 - GDP와 국세비중이 각각 0.8%, 6.5%이었던 1970년과 비교하면 주세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 특히 소득 대비 비중에 비하여 국세 대비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

- 주종별로 보면 2003년 당시 맥주의 세수비중은 51.1%, 소주 27.4%, 위스키 7.0%이며 수입분은 9.5%
 - 맥주의 경우 소비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와 소주세율 인상으로 세수 비중이 1992년 70.2%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 소주는 2000년 35%에서 72%로 세율이 인상되면서 그 비중이 10%대에서 20%대로 증가

3) 우리나라는 종가세 체제이므로 주종간의 세금부담(순알콜 기준)은 세율도 중요하지만 가격에 따라 변화

- 국산 위스키의 경우 2000년 세율(100%→72%)이 큰 폭으로 인하되었지만 소비 증대로 세수비중이 약간 감소
- 이외 수입분의 경우 수입 증대로 9%대의 세수 비중을 유지

<표 II-3> 연도별 주세 세수(1970~2003)

	(단위: 천억원, %, 십억원)							
	실적 기준			부과 기준				
	세수	GDP 비중	국제 비중	소주	맥주	위스키	수입분	합계
1970	0.2	0.8	6.5	2.6	10.4	-	0.2	21.7
1975	0.8	0.8	6.5	18.8	43.0	-	0.7	83.9
1980	3.0	0.8	5.6	47.6	202.0	13.9	11.1	321.8
1985	5.0	0.6	4.5	80.6	334.2	33.5	15.9	516.1
1990	10.2	0.6	3.8	123.7	655.2	68.0	73.8	1,021.7
1991	11.4	0.5	3.8	128.1	799.2	68.4	77.1	1,166.3
1992	13.3	0.5	3.8	149.9	910.6	63.6	79.7	1,298.2
1993	13.7	0.5	3.5	170.8	948.0	78.2	83.9	1,372.3
1994	15.5	0.5	3.3	193.3	1,149.9	89.4	114.1	1,640.5
1995	18.2	0.5	3.2	192.2	1,283.7	102.7	168.0	1,840.4
1996	20.3	0.5	3.2	218.9	1,363.1	151.1	130.9	1,974.1
1997	17.9	0.4	2.6	239.5	1,302.1	148.8	159.2	1,965.2
1998	18.1	0.4	2.7	284.4	1,195.7	145.9	95.6	1,835.5
1999	20.8	0.4	2.7	329.3	1,248.2	205.6	94.6	2,004.7
2000	18.6	0.4	2.0	520.9	1,276.6	188.1	135.2	2,254.2
2001	24.7	0.5	2.6	529.6	1,164.2	214.9	175.8	2,253.4
2002	26.6	0.4	2.6	621.5	1,294.5	262.1	241.5	2,574.9
2003	27.3	0.4	2.4	706.1	1,334.4	183.6	249.3	2,61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우리나라 주세의 1인당 부담액은 2003년 부과 기준으로 약 54,500원으로 맥주 27,800원, 소주 14,700원 그리고 위스키 및 수입분 9,000원
- 한편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주세 부담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2000년 당시 87.1 유로에 이르는데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12.7유로에서 핀란드 239.6유로 등으로 다양
 - 1인당 주세가 100유로를 초과하는 국가들 -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포도주에 과세하며 모든 주종에 대한 세율이 높은 국가

- 2000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세수는 약 47,700원으로 42.1달러(44.7유로)
 - 이는 프랑스나 독일과 유사한 수준인데 단, 이들 국가는 포도주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

<표 II-4> EU 국가들의 1인당 주세 부담(2000년 기준)

	(단위: 유로)			
	맥주	포도주	증류주	총합
평균 ¹⁾	37.4(47.7)	17.1(33.9)	32.7(60.6)	87.1(146.7)
오스트리아	16.2	3.1	20.0	39.2
벨기에	20.2	15.4	20.5	56.0
덴마크	45.5	30.1	39.2	114.8
핀란드	97.9	39.9	101.8	239.6
프랑스	31.8	5.3	5.0	42.0
독일	26.2	6.2	10.2	42.6
크리스	19.8	0.0	6.2	26.0
아일랜드	59.0	37.5	129.6	226.0
이탈리아	8.1	0.3	4.3	12.7
룩셈부르크	59.5	2.3	6.5	68.4
네덜란드	26.2	11.1	18.0	55.3
포르투갈	11.0	1.3	8.8	21.1
스페인	□□ 21.2	0.5	□□ 5.3	26.9
스웨덴	65.7	48.5	32.2	146.3
영국	52.8	54.6	82.6	188.9

주: 1) 괄호 안은 포도주에 과세하는 7개국의 평균 2)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1999년 수치
 자료: Stephen Smith, Economic Issues in alcohol taxation, altax060402.doc, 2002(원자료: 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publications/info_doc/taxation/c4_excise_tables)

- 포도주에 과세하는 7개국 평균 세금은 146.7유로로 우리나라의 약 4배에 해당
 -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1인당 세수는 맥주 47.7유로, 포도주 33.9유로 그리고 증류주는 60.6유로
 -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는 25.3유로이며 증류주는 16.7유로(소주 10.3유로, 위스키와 수입분 주류 6.4유로)

-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 소비가 세 부담이 매우 적은 소주에 편향되어 세수가 유럽국가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

2. 주류 출고 및 소비동향

가. 출고량의 변화 추이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출고량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이후 탁·약주 대신 맥주와 양주가 증가하고 소주 출고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
- 소주의 경우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세율인상 시점을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대략 22ℓ를 유지하다가 2003년 당시 24.3ℓ로 약간 증가
 - 이를 병수로 환산하면 15세 이상 1인당 약 67.5병에 해당(360ml 기준)

연도	<표 II-5> 연도별 주종별 총 출고량과 1인당 출고량(15세 이상)									
	출고량 ¹⁾		탁·약주		소주		맥주		위스키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983	2,353.0	86.8	862.4	31.8	583.9	21.5	692.5	25.6	3.2	0.1
1985	2,453.0	86.1	874.6	30.7	623.0	22.9	772.3	26.9	4.0	0.1
1990	2,872.3	90.1	564.1	17.7	701.6	22.0	1,307.7	41.0	8.6	0.3
1991	2,987.3	92.1	442.4	13.6	677.9	20.9	1,583.9	48.8	9.9	0.3
1992	2,972.1	90.2	379.4	11.5	723.2	22.0	1,574.5	47.8	11.2	0.3
1993	2,866.1	85.7	322.2	9.6	744.0	22.2	1,508.9	45.1	11.6	0.3
1994	3,144.7	92.6	302.9	8.9	765.2	22.5	1,769.1	52.1	15.2	0.4
1995	3,163.6	91.6	249.3	7.2	761.8	22.1	1,850.3	53.6	16.5	0.5
1996	3,205.5	91.3	214.8	6.1	787.2	22.4	1,868.4	53.2	13.8	0.4
1997	3,134.0	87.8	190.5	5.3	813.6	22.8	1,799.2	50.4	11.0	0.3
1998	2,922.5	80.8	190.8	5.3	869.5	24.0	1,536.6	42.5	8.1	0.2
1999	3,011.7	83.8	182.8	5.3	811.1	23.8	1,678.7	43.1	10.1	0.3
2000	3,065.6	82.7	181.0	4.9	866.9	23.4	1,730.8	46.7	12.6	0.3
2001	3,025.3	80.7	170.2	4.5	784.9	20.9	1,755.2	46.8	14.3	0.4
2002	3,300.9	87.1	175.9	4.6	866.3	22.9	1,935.2	51.1	17.2	0.5
2003	3,303.6	86.3	189.2	4.9	928.5	24.3	1,896.3	49.5	12.1	0.3

- 맥주는 1983년 이후 25.6ℓ에서 49.5ℓ로 증가(175%)하여 소비가 가장 많이 증대하였는데

- 따라서 1인당 맥주소비는 약 128병에서 248병으로 증가(500ml 기준)
- 위스키의 경우 완제품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2003년의 경우 대략 1인당 1.8병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350ml 기준)

나. 주류 소비량: 국제비교

- 2002년 국민 1인당 순알콜 소비량을 보면 룩셈부르크, 헝가리, 아일랜드, 체코, 독일, 프랑스가 10ℓ 이상을 소비하며 미국과 일본은 약 6.6ℓ 수준
 -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003년 당시 6.7ℓ를 소비하여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⁴⁾
 - 그러나 증류주만을 기준하면 우리나라는 고도주 소비에 있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동구국가들의 음주행태와 유사
 - 즉, 증류주는 러시아(6.5ℓ), 라트비아(5.6ℓ), 루마니아(4.7ℓ), 슬로바키아(4.3ℓ) 등의 동구국가들이 주로 소비
 - 반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의 증류주 소비는 대개 2ℓ 이하로 맥주와 포도주를 많이 섭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소비가 약 4.5ℓ에 육박하여 세계 4위에 해당
 - 전체 알콜 소비량에서 증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7%로 러시아(76%), 라트비아(73%) 보다는 낮으나 50%대를 전후한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보다는 높은 상태
-
- 이는 물론 저가 판매되는 소주의 1인당 알콜 섭취량이 약 4.2ℓ로 추정되기 때문

4) 수출입을 고려한 주종별 소비량은 희석직 소주 863,500천kl, 맥주 1,836,378천kl, 위스키와 브랜디 등 기타 증류주 40,358kl 이외 탁·약주, 포도주, 청주 등을 포함하여 순알콜로 보면 총 321,812천kl로 이를 총인구 47,849.2천명으로 나눈 수치(소주 23도, 맥주 4.4도, 위스키 40도 기준)

<표 II-6> 인구 1인당 주류 소비: 국제비교

(단위: 알콜 리터)

순위	총 알콜 소비량			증류주 소비량		
	국가	2001	2002	국가	1998	1999
1	룩셈부르크	12.4	11.9	러시아	6.0	6.5
2	헝가리	11.1	11.1	라트비아	4.9	5.6
3	아일랜드	10.8	10.8	루마니아	4.7	4.7
4	체코	10.9	10.8	슬로바키아	4.1	4.3
5	독일	10.4	10.4	폴란드	3.3	3.5
6	프랑스	10.5	10.3	체코	3.3	3.3
7	포르투갈	10.3	9.7	태국	3.5	3.1
8	스페인	9.8	9.6	헝가리	3.1	3.0
9	영국	9.1	9.6	중국	2.7	2.7
10	덴마크	9.5	9.5	그리스	2.5	2.5
11	오스트리아	9.0	9.2	일본	2.5	2.5
12	사이프러스	7.9	9.1	사이프러스	2.6	2.5
13	스위스	9.2	9.0	프랑스	2.4	2.4
14	슬로바키아	8.7	8.8	스페인	2.5	2.4
15	러시아	8.6	8.6	불가리아	2.5	2.4
16	루마니아	9.9	8.5	핀란드	2.2	2.3
17	네덜란드	8.1	8.0	아일랜드	1.9	2.1
18	벨기에	8.1	7.9	독일	2.0	2.0
19	그리스	7.9	7.8	미국	1.9	1.9
20	라트비아	7.5	7.7	캐나다	1.8	1.8
21	핀란드	7.4	7.7	네덜란드	1.7	1.7
22	이탈리아	7.4	7.4	룩셈부르크	1.6	1.6
23	호주	7.3	7.3	영국	1.3	1.5
24	뉴질랜드	6.6	6.9	포르투갈	1.5	1.5
25	캐나다	6.7	6.9	스위스	1.4	1.4
26	미국	6.8	6.7	오스트리아	1.4	1.4
27	일본	6.5	6.5	호주	1.3	1.4
28	아르헨티나	6.3	6.3	벨기에	1.1	1.1
32	아일랜드	4.9	4.5	덴마크	1.1	1.1
33	스웨덴	4.9	4.9	스웨덴	1.1	1.0
38	노르웨이	4.4	4.4	노르웨이	0.8	0.9

주: 순위는 2002년 총알콜 소비량 기준임.

원자료: World Drink Trends 2004 Edition, World Advertising Research Institute

자료: www.alcoveb.com

III. 우리나라 음주성향 및 그 폐해

1. 우리나라 음주행태와 습관

가. 음주 성향과 과음

1) 음주자 비중과 음주빈도

- 전체 인구에서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1986년 48.3%에서 1992년 57.9%, 2003년 64.3%로 증가
 - 남성의 음주비율은 같은 기간에 80.1%에서 1989년 85.3% 2003년 80.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 여성은 1986년 20.6%에서 1992년 33% 2003년 49%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음주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여성 음주

	<표 III-1> 20세 이상 인구		음주비율(1992~2003)			
	1986	1889	1992	1995	1999	2003
전체	48.3	57.0	57.9	63.1	64.6	64.3
남	80.1	85.3	84.7	83.0	82.9	80.7
여	20.6	32.1	33.0	44.6	47.6	49.0
20~29세			64.6	74.3	75.9	77.1
30~39세 □□		□□	62.0	□□69.4	74.1	74.8
40~49세 □□			58.2	62.8	67.2	67.5
50~59세			53.3	54.5	56.4	55.8
60세 이상 ¹⁾			42.1	40.8	39.6	36.4

주: 2001년 기준으로 12~19세 음주비율은 35.5%, 60~69세는 46.1%, 70세 이상은 36.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및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의식행태편, 2002. 12.

- 연령별로는 20~40세가 75% 이상으로 지난 20년간 약 10%p 이상 증가
 - 40세에서도 음주율이 10%p 증가하였고 50세는 변화가 없으며 60세 이상은 음주율이 감소하는 추세

- 한편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01년 당시 12~19세 청소년 음주비율은 32.3%(남 35.5%, 여 29%)이었으나 2003년 55%로 크게 증가

- WHO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음주자는 평균 27.1%(남 12.4%, 여 38.9%)인데 이는 미국(33.9%)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보다 낮은 수치
 - 우리나라 음주비율은 러시아와 유사하며 중국 등보다는 높은 상태
 - 그러나 향후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음주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은 6.1%(남 9.3%, 여 1.2%)
 - 특히 젊은 세대보다 50세가 11.2%, 60세 이상이 17.2%로 알콜 음주의 중독성을 반증

		<표 III-2> 20세 이상 인구 음주 빈도수(2003)					
							(단위: %)
		음주	월1회이하	월2~3회	주1~4회	주2~4회	거의 매일
전체	64.3	24.9	31.5	27.0	10.5	6.1	
남	80.7	13.6	28.7	33.3	15.0	9.3	
녀	49.0	42.3	35.7	17.2	3.6	1.2	
20~29세	77.1	28.0	39.8	25.8	4.9	1.4	
30~39세	74.8	25.5	32.9	28.3	9.9	3.5	
40~49세	67.5	22.9	28.2	28.1	13.6	7.3	
50~59세	55.8	22.7	24.8	27.0	14.2	11.2	
60세 이상	36.4	22.5	22.0	23.8	14.5	17.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

- 자주 마시는 술은 고도주인 -소주- 등 증류주가 약 60%, 맥주는 37%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소주 등을 더 주로 음용
 - 남자는 소주(76%), 여자는 맥주(58%)를 주로 음용

- 13~18세 청소년 가운데 68%가 주로 맥주를 소비하여 청소년들이 술을 배울 때 맥주를 많이 이용
 -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맥주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소주를 주로 음용하여 음주습관이 저알콜에서 고알콜로 이전될 가능성을 시사
 - 한 예로 애호 주종에 있어서 40세 이상은 맥주와 소주가 각각 21%, 74%이지만 20세는 맥주와 소주가 각각 48%, 50%로 유사한 비중

- 청소년과 여자가 맥주를 주로 소비하여 소주 등 증류주와 포도주의 음주횟수와 알콜 음용량은 각각 맥주의 2배와 3배에 해당

<표 III-3> 자주 마시는 주종과 평균 음주량 및 음주횟수

	(단위: %, 그램)		
	맥주	포도주	소주·양주
전체	37.0	3.0	59.9
남	21.1	2.9	76.0
여	57.9	3.2	38.9
13~18세	67.5	-	32.5
19~29세	48.2	1.7	50.1
30~39세 □□	40.7	2.2	57.1
40~59세	21.0	5.2	73.8
주당 음주횟수	0.8	2.0	1.9
1회당 알콜 섭취량	26.1	63.2	75.6

자료: 정우진 외,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2) 과음행태의 변화

- 음주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원인은 과다 음주(남용)⁵⁾와 알콜 의존인데
 - 최근 몇 년 사이에 과음 혹은 폭주하는 경향이 나타나 음주시 소주 1병 이상 소비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40.5%)에 육박하는 것이 문제⁶⁾
 - 맥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1회에 맥주 4병 이상 음용하는 비중이 약 38%에 달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21%로 최근 2배 이상 증대

- 5) WHO는 남자의 경우 매일 술 5잔 이상(알콜 60g)을 마시는 행위를 과음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약 소주 ⅔병(360ml), 맥주 2⅔병(500ml)에 해당
- 6) 대부분 나라에서 음주량의 분포는 log normal distribution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비음주자 3명, 음주자 7명 가운데 3명이 1잔을 마시면 나머지 4명이 각각 1.5잔, 3잔, 6잔, 15잔을 마셔 과음자 10%가 전체 주류의 약 53%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

- 1999년 당시 전체 음주자 중 소주 1병⁷⁾ 이상의 음주자 비중이 31.3%에서 2003년 40.5%로 9%p 이상 증가(소주 2병 이상의 폭주는 6.3%→9.5%)
 - 남자와 여자 공히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주 1병 이상 음주자가 남자는 46.5%에서 57.2%, 여자는 6.7%에서 14.5%로 증가
 - 소주 1병 이상 과음자의 비중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60세 이상은 과음자가 적은 편

<표 III-4> 20세 이상 인구 1회 소주 음주량(2003)

	(단위: %)					
	음주비율	~소주 2잔	소주 2잔	반병 소주 1병	소주 2병	소주 3병~
1999년 전국	64.6	38.9	29.8	25.0	5.5	0.8
남자	82.9	21.1	32.5	36.7	8.5	1.3
여자	47.6	67.7	25.5	6.0	0.6	0.1
2003년 전국	64.3	30.4	29.2	31.0	8.1	1.4
남자	80.7	15.6	27.1	42.7	12.4	2.1
여자	49.0	53.2	32.3	12.8	1.5	0.2
연령별						
20~29		25.8	31.6	31.5	9.5	1.6
30~39		29.1	28.8	31.9	8.8	1.3
40~49		30.3	28.2	32.6	7.7	1.2
50~59 [□]		32.3	26.8	31.6	7.7	1.5
60세 이상		43.6	29.4	22.1	4.1	0.8

주: 소주 1병 = 360ml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마찬가지로 맥주에서도 4병⁸⁾ 이상 음용하는 인구가 1999년 31.3%에서 37.5%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자는 6.7%에서 20.8%로 증대
 - 맥주 8병(소주 1.4병 상당) 이상 폭주하는 음주자 비중은 6.3%에서 10.5%로 증가(남 9.8%→15%, 여 0.7%→3.6%)
 - 20대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서 맥주 8병 이상 소비자가 크게 증가

7) 소주 1병(360ml)은 알콜 23도를 기준하면 알콜 함유량이 약 82.8ml에 해당

8) 맥주 4병(360ml)은 알콜 4.4도를 기준할 때 총 함유량이 약 63.4ml에 해당

<표 III-5> 20세 이상 인구 1회 맥주 음주량(1999~2003)

(단위: %)

	음주비율	음주량			
		~맥주 1병 ¹⁾	맥주 2병	맥주 4병	맥주 8병~
전국	64.3 (64.6)	24.9 (38.9)	31.5 (29.8)	27.0 (25.0)	10.5 (6.3)
남	80.7 (82.9)	13.6 (21.1)	28.7 (32.5)	33.3 (36.7)	15.0 (9.8)
여	49.0 (47.6)	42.3 (67.7)	35.7 (25.5)	17.2 (6.0)	3.6 (0.7)
20~29세	77.1 (75.9)	28.0 (36.8)	39.8 (32.5)	25.8 (23.7)	4.9 (7.0)
30~39	74.8 (74.1)	25.5 (37.5)	32.9 (28.3)	28.3 (27.2)	9.9 (6.9)
40~49	67.5 (67.2)	22.9 (38.3)	28.2 (29.0)	28.1 (26.4)	13.6 (6.3)
50~59	55.8 (56.4)	22.7 (38.5)	24.8 (29.6)	27.0 (26.2)	14.2 (5.7)
60세 이상	36.4 (39.6)	22.5 (49.5)	22.0 (29.6)	23.8 (17.4)	14.5 (3.4)

주: 1. 괄호안은 1999년 수치임 2. 맥주 1병 = 소주 2홉 = 360ml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3) 성인의 알콜 의존도⁹⁾

□ 우리나라 성인 음주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알콜 남용 혹은 의존적 성향을 보이며 45~64세 이상이 26.2% 가장 높은 편¹⁰⁾

- 남자의 경우 26.1%이며 여성은 10.5% 인데 특히 여성의 경우 1999년 3.1%에서 10.5%로 3배 증가
- 지역별 알콜 의존도는 서울이 21.7%(알콜 남용과 의존 12.8%, 8.8%)이고 강화도는 총 26.8%(각각 25.6%, 10.3%)로 대도시 보다 지방이 심각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2001년 당시 알콜 중독자가 약 221만명(20세 이상 총 인구의 6.8%)에 이를 것으로 추산(보건백서)

9) 알콜 의존이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일어나거나 강박적으로 알콜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알콜 남용이란 음주로 인하여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나타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의미

10) 알콜 의존의 정의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른데 CAGE 방식에 의하면 약 340~460만 명, WHO의 ICD-10 방식에 의하면 710만 명이 알콜 의존적 양상

<표 III-6> 성인 음주자의 알콜 의존도

(단위: %)					
	총 계	20~29	30~44	45~64	65세 이상
계	20.9	16.9	21.2	26.2	14.5
남	26.1	22.9	27.2	29.2	17.3
녀	10.5	9.2	9.6	16.7	6.4

자료: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2003)

나. 청소년 음주

- 12~19세 청소년 음주율은 2001년 당시 33%였으나 2003년에는 약 55%로 크게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가 정확하다면 청소년 음주율은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
 -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남자 음주비율은 35.5%, 여자는 29%
 - 주 3~4회 이상 마시는 청소년은 3.8%이며 주 1~2회는 17.8%

<표 III-7> 청소년 인구 음주비율(12~19세)					
(단위: %)					
	현재 음주				
	거의 안마심	가끔	자주	거의 매일	안마심
전국	16.2	13.9	2.2	-	67.0
2001년	월 2~3회	1주 1~2회	1주 3~4회	거의 매일	안마심
2003년 ¹⁾	33.0	17.8	3.2	0.6	45.4

주: 1)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14,088명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식행태편, 2002.

- 청소년이 주로 마시는 술은 맥주(28.9%), 소주(23.5%), 막걸리(6.3%), 양주(3.5%) 등으로 맥주와 소주의 습 -
 - 맥주는 저도주이지만 소주의 경우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한 이유로 청소년이 음용하여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을 암시¹¹⁾

- 청소년 음주에 관한 심각성은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2000년 WHO 유럽국가 각료회의는 2000~2005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세우고
 - 음주연령, 음주기회 그리고 주류가격 등에서 청소년 음주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미국에서도 국립 학술원(NSA)은 2003년 청소년 음주를 감축하기 위하여 주세율 특히, 맥주세를 인상하고 물가와 연동된 종량세 도입을 의회에 권고¹²⁾
 - 미국에서는 청소년 시절(14세 기준) 음주시 습관성 음주뿐만 아니라 알콜 의존과 사고 가능성 등 고위험 음주 경향이 약 3배 증대

- 주류는 습관성과 중독성을 가진 제품이며 특히 음주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음주를 통제할 필요
 -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음주를 하고 이 가운데 약 30%가 소주 등 가격이 저렴한 고도주를 음용하는 양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1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www.kodcar.or.kr/karf_alcohol)

12) Recommendation 12-7: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should raise excise taxes to reduce underage consumption and to raise additional revenues for this purpose.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aising beer taxes, and excise tax rates for all alcoholic beverages should be indexed to the consumer price index so that they keep pace with inflation without the necessity of further legislation(, National Science of Academy,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 2003 Sep 10)

2. 왜곡된 음주문화로 인한 피해와 비용

가. 과다 음주로 인한 피해

- WHO 등 대다수 연구기관에 의하면 과다 음주로 인한 피해는 간질환, 생산성 손실과 산업재해, 자살¹³⁾, 음주사고, 가정폭력 등이 있는데
 -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익사 등 사고 사망의 34%, 살인 47%, 자살 41% 그리고 방화의 44%가 알콜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¹⁴⁾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으나 경찰청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11%, 교통사고 사망·부상의 15%가 숙취상태에서 발생하며 음주소란 단속은 연 약 7만4천 건이 발생
 - 산업장 사고의 20~25%는 음주 관련 사고이며 음주로 인한 수명 손실이 남자 3.1년, 여자 1.1년에 이른다는 추정¹⁵⁾
 - 우리나라는 특히 절대 음주량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표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
 - 고도주인 소주 중심의 소비와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하여 과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추정
 - 지난 10년간 알콜 소비로 인한 피해가 상당 수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 인구 10만명당 간질환 사망률은 2003년 21명, 자살 24명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19명으로 대다수 국가에 비하여 이들 사망률이 높은 상황
 - 특히 자살하는 사람이 최근 급증하여 교통사고와 함께 조사대상 국가 중 그 수치가 가장 높고 간질환 사망률도 헝가리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아 우리나라 음주행태/문화의 심각성을 반증
- 13) 지난 1년간 자살 의도가 있었던 비율을 보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약 23%인데 비하여 알콜에 의존하는 사람은 31%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25%, 63%로 술을 먹는 여성 중 자살하려는 사람의 2.5배로 증가(정우진 외,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 14) David H. Jeringan,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and Young People , WHO 2001
- 15) 정우진 외, 알콜의 보건경제학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원재료: 천성수 외 대학생 절주홍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2001)

<표 III-8> 주요 국가별 음주 관련 질환 및 사망률

(단위: 사망자수/인구 10만명)

국가명	조사연도	알콜소비량	간질환 사망률	알콜남용 질환	자살	교통사고 사망률
한국	1993	-	31.4		10.6	33.0
	2001	-	23.4	2.5	15.1	22.1
	2003	6.8	20.6		24.0	19.1
룩셈부르크	2002	11.9	15.4	4.2	17.2	14.6
체코	2001	10.8	14.7	0.8	13.5	13.3
헝가리	2002	11.1	46.1	2.9	23.2	15.4
아일랜드	2000	10.8	4.0	2.0	11.7	10.4
프랑스	2000	10.3	13.4	3.4	16.8	12.0
독일	2001	10.4	15.4	4.0	11.0	8.7
영국	2002	9.6	10.4	0.9	6.6	5.3
미국	2000	6.7	9.5	1.9	9.8	15.8
일본	2000	6.6	7.6	0.2	19.1	8.5
오스트리아	2002	9.2	17.0	3.0	16.1	11.1
노르웨이	2001	4.4	3.7	3.4	11.5	6.5
스웨덴	2001	4.9	5.1	2.5	11.3	6.3
캐나다	2000	6.9	6.7	1.6	10.8	9.6
이탈리아	2000	7.4	13.1	0.2	8.2	7.0
네덜란드	2000	8.0	4.5	1.4	12.0	13.4
호주	2001	7.3	4.7	1.0	11.9	9.7
스페인	2000	9.6	11.6	0.5	6.9	14.6
덴마크	2000	9.5	14.0	6.9	12.4	8.4
벨기에	1999	7.9	10.5	-	18.4	14.3
멕시코	1999	3.1	43.7	5.8	3.8	18.7

주: 1. 알콜 소비량은 2002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03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 2004.9.,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2004」 및 <http://data.euro.who.int/alcohol>

□ 음주로 인한 피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표는 음주운전¹⁶⁾인데

- 2003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는 31,200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100명, 부상자수는 55,200명
- 특히 1990~2003년 사이에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사고는 2.9%에서 13%, 음주사고 사망은 3.1%에서 15.4%, 부상은 3.3%에서 14.7%로 증가

□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는 약 25만 건에서 변함이 없는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증가

- 특히 음주단속건수가 1995년¹⁹⁾ 약 16만 건에서 2003년 약 48.5만 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음주사고는 계속 증가하여 교통 단속만으로는 한계¹⁷⁾

16)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상황

<표 III-9>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및 부상자

(단위 : 건, 명, %)

연도	총 사고		음주 사고		총사망자		음주 사망자		총부상자		음주 부상	
	건	비율	건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90	255,303		7,303	2.9	12,325		379	3.1	324,229		10,707	3.3
1991	265,964		8,397	3.2	13,429		476	3.5	331,610		11,967	3.6
1992	257,194		10,319	4.0	11,640		483	4.1	325,943		14,971	4.6
1993	260,921		14,961	5.7	10,402		596	5.7	337,679		21,765	6.5
1994	266,107		17,900	6.7	10,087		565	5.6	350,892		26,918	7.7
1995	248,865		17,777	7.1	10,323		690	6.7	331,747		26,300	7.9
1996	265,052		25,764	9.7	12,656		979	7.7	355,967		38,897	10.9
1997	246,452		22,892	9.3	11,603		1,004	8.7	343,159		36,023	10.5
1998	239,721		25,269	10.5	9,057		1,113	12.3	340,564		40,489	11.9
1999	275,738		23,718	8.6	9,353		998	10.7	402,967		39,282	9.7
2000	290,481		28,074	9.7	10,236		1,217	11.9	426,984		47,155	11.1
2001	260,479		24,994	9.6	8,097		1,004	12.4	386,539		42,165	10.9
2002	231,026		24,983	10.8	7,222		907	12.6	348,149		42,316	12.2
2003	240,832		31,227	13.0	7,212		1,113	15.4	376,503		55,230	14.7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 즉, 자동차 1만대를 기준하여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4.6명, 부상자 비율은 222.3명으로
- 미국(2.1명, 129.6명), 일본(1.2명, 144.2명)뿐만 아니라 알콜 음용량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일부 유럽국가보다 심각
 - 음주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헝가리(4.8명), 체코(3.3명) 그리고 폴란드(3.8명)의 수준이며 부상자 비중은 이들 국가보다 3~4배 수준

17) 즉, 자동차 1만대당 단속건수가 같은 시기에 약 176건에서 298건으로 증대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

나.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1) 사회·경제적 비용의 개념

- 과도한 음주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인명 손상과 의료비 지출, 생산성 저하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범죄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
 - 음주로 인한 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접근방식(COI approach)이 많이 사용되는데,
 -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음주자 본인이 지불하지 않는 비용 혹은 혜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 한 예로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은 평균생산성에 기초한 임금 등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정도와 그로 인한 세수 감소¹⁸⁾만이 외부 비용이며
 - 본인의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모두 사적 비용
 - 이외 의료비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의 의료비가 아닌 개인보험 의료비도 사적 비용에 해당
 - 또한 음주로 인한 범죄, 음주운전, 소란 등의 단속 그리고 알코올중독의 예방, 관리, 재활 등을 위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하는 교육이나 연구 등도 외부비용

2)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 우리나라 음주비용은 1995년 9.6조원(GDP 대비 약 2.75%), 2000년 11.9조원(2.28%)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¹⁹⁾
 - 이 가운데 생산성과 조기사망 손실이 각각 약 59%, 31%로 합계 90%에 달하고 이외 치료비 9.5%, 재산 및 행정비용 손실은 0.6%에 불과

18) 부상자가 일하지 않는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반면 평균 수준의 공공재 서비스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사망차는 제외)

19) 노인철·서문희·김영래,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정우진·김한중·이상욱·이선미·이후연·전현준·신승호·최윤정, 알코올의 보건경제학,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 이들 두 연구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비용 추정을 하여 차이가 없는 편

□ 특히, '사회부담'이라고 지칭된 항목에서도 일부만이 사회적 비용이며 반면 사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사회가 지출하는 주요 비용이 누락

<표 III-10> 음주로 인한 총비용과 사회적 비용 추정

	(단위: 십억원, %)								사회적 비용 (2003)
	COI(Cost of Illness) 기준								
	노인철 외(1995년 기준)				정우진 외(2000년 기준)				
	사회 부담	개인 부담	계	비중	사회 부담	개인 부담	계	비중	
의료비(재활예방) ¹⁾									50
직접의료비	260	223	483		352	117	470		677
간접의료비	-	184	184		-	179	179		175
의료보조비	-	246	246		-	260	260		-
소계	260	653	913	9.5	352	557	909	7.6	902
생산성감소(피해자)									238
질병사고(세수)	486	-	486		1,011	-	1,011		193
음주숙취(세수)	5,145	-	5,145		5,274	-	5,274		2,041
소계	5,631	-	5,631	58.9	6,285	-	6,285	52.7	2,472
조기사망손실									
질병	1,669	-	1,669		2,984	-	2,984		
교통사고	283	-	283		1,485	-	1,485		407
각종사고	853	-	853		-	-	-		383
장례비	5	158	163		-	-	-		37
소계	2,809	158	2,968	31.0	4,469	-	4,469	37.5	828
재산피해액									
교통사고	20	20	40		194	-	194		50
화재	4	3	7		50	-	50		5
소계	24	23	47	0.5	244	-	244	2.0	55
행정비용									
자동차보험	7	-	7		15	-	15		21
행정(범죄·단속)	2	-	2		9	-	9		7(612)
소계	9	-	9	0.1	24	-	24	0.2	28
알콜지출	-	4,056	4,056		-	3,004	3,004		-
총계	8,732	4,891	13,623		11,374	3,561	14,935		4,897

주: 1) 팔호 안은 기존 연구가 간과 혹은 과다 산정한 외부효과 항목과 비용을 의미
 자료: 노인철 외(1997) 및 정우진 외(2004)²²⁾

-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98년 당시 전체 비용 1,846억 달러²⁰⁾ 가운데
 - 연방정부 부담 20%, 지방정부 부담 18% 그리고 피해자 비용 6%로 총 사회적 부담을 전체 음주비용의 약 44%로 추정(GDP 대비 약 1.0%)²¹⁾
 - 즉, 생산성과 조기사망 손실 72.7%, 치료와 예방 등 의료비 14.3% 그리고 범죄, 사고, 행정 등 기타 사회적 비용은 13.5%로 생산성 손실이 90%를 초과하는 우리와 다른 결과²²⁾

- 따라서 <표 III-10>의 음주비용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출하기 위하여
 - 노인철 외(1997)에서 외부효과 비용(피해자 비용)을 구분하고 누락된 사회적 비용을 첨가한 후 이를 2003년 가격으로 재환산

- 구체적으로 누락된 비용은 음주 관련 범죄로 인한 비용으로 2003년 기준 약 6120억원과 알콜 중독자에 대한 재활, 예방, 연구 등으로 500억원²³⁾
 - 여타 비용은 노인철 외(1997)를 2003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로 조정하되, 평균임금 상승률로 2003년 가격화²⁴⁾

- ~~□ 이 경우 2003년 당시 사회적 비용은 약 4.9조원으로 GDP 대비 0.65%, 총 비용 17.02조원의 28.8%²⁵⁾~~

20) Harwood H. J. Updating Estimates of the Economic Cost of Alcohol Abuse in the US: Estimates, Update Methods and Data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0

21) 연방정부 부담은 세수손실 15%, 치료비, 연구, 예방 등 5%, 지방정부 부담은 세수손실 9%, 범죄 및 교통사고 등 행정비용 등이 9%, 그리고 피해자 부담은 조기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재산 피해 등이 6%

22)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의 25~30%, 재산 관련 범죄의 3~4%가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가 약 63억 달러(총비용의 3.4%)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

23) 범죄·단속 비용은 음주운전(2003년 48.5만건)과 음주소란 단속(7.4만건), 가정폭력(1.6만건) 이외 강력범 등 음주 후 각종 범법행위를 포함: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나 2003년 우발적 범행동기가 14.2%, 취중 가정폭력은 11.1%로 경찰 등 관련기관 총 예산의 10%, 6,120억원을 음주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면 총비용의 3.1%에 해당(미국의 경우 총비용의 3.4%): 이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에 2,299억원을 지출하고 우리나라 2003년 민간경비업체 도급액은 2.5조원으로 추정

24) 물가상승률(8년간 39%)이나 GDP 증가률(92%)이 아닌 임금 상승률(78%)을 사용한 이유는 비용의 주된 부분이 생산성 손실이기 때문

- 순알콜 1리터당 사회적 비용은 15,200원, 사적 비용은 37,700원으로 가
중평균 세전가격 11,600원의 약 131%, 324%에 상당²⁶⁾
- 이러한 비용은 그러나 음주 남용으로 인한 가정폭력과 범죄 피해자 등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최소의 사회적 비용
- 만약 사회적 비용에 대한 미국 추정치(44%)를 준용하면 우리나라 사회
적 비용은 약 7.5조원으로 알콜 1리터당 23,300원으로 세전가격의 200%

- 한편 국가별 음주비용을 보면 미국(1998년)의 경우 GDP 대비 2.2%, 영국
(2001년) 2.3%로 우리나라와 유사
 - 일본(1.89%)이나 스위스(1.71%) 그리고 프랑스(1.41%)는 낮은 편

		<표 III-11>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제비교			
		(단위: 억달러, %, 달러)			
	연도	총비용	GDP 점유율	1인당 비용	
한국	1995	125	2.75	274.5	
일본	1987	45.78	1.89	376.3	
호주	1998	48.2	1.28	256.1	
독일	1993	46~69	2.81~4.22	574.9~862.4	
뉴질랜드	1985	11.6	2.30	357.1	
	1990	161	4.00	470.2	
미국	1988	1,360	2.77	558.8	
	1998	1,846	2.23	683.0	
프랑스	1997	198.0	1.42	337.8	
핀란드	1990 □□	3.35~5.74	2.45~4.19	672~1151	
스위스	1998	44.7	1.71	628.5	
영국	2001	324.8	2.27	551.2	

주: 자국 화폐 기준을 조사연도 환율로 달러화
 자료: 노인철외(1997) 및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 2004.

25) 1995년 총비용 9.567조원을 임금상승률로 곱하면 2003년 총비용은 17.02조원으로 GDP
 대비 2.35%로 정우진(2004)과 유사: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28.8%
 는 미국 44%보다 낮은 편 - 24 -

26) 가중평균가격은 주종별 세전가격(알콜 1리터당 소주, 맥주, 위스키 등 각각 4,550원,
 19,318원, 53,662원 등)을 2003년도 주종별 소비량(각각 198,605kl, 80,801kl, 16,143kl 등)
 으로 가중 환산

IV.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1. 주세율 개편시 고려사항

가. 수요 탄력성

- 주류 제품의 수요 탄력성이 낮으면 세금 인상을 통한 소비 감소로 외부 불경제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 적절한 음주는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정상 음주자와 알콜 남용자/청소년 음주자의 탄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표 IV-1> 주류의 수요 탄력성: 국제비교				
	연도	맥주	포도주	증류주	기타	
우리나라	2003	0.86		1.55	0.06(소주)	
미국	1993 ¹⁾	0.3	1.0	1.5		
	1997	0.16	0.58	0.36	0.52 (평균)	
단기 (장기)	1995	0.20 (0.69)				
청소년(장기)	1995 ²⁾	0.41 (0.65)			0.29 (중독성 무시)	
7개국 평균 ³⁾	1997	0.35	0.68	0.98		
호주	1989	0.43	0.37	0.83	-0.50 (맥·증) ⁴⁾	
단기 (장기)	1988	0.39 (1.23)	0.20 (0.78)	□□		
캐나다	1997 ²⁾	1.02	-	0.34	수입주류	

주: 1) 15개 연구 평균값 2) 중독성을 고려한 수치임 3) 캐나다,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 7개국의 평균값 4) 맥주와 증류주 사이의 교차탄력성을 의미
 자료: Chaloupka et al, Economic Perspectives on Alcohol Taxation, impacTEEN, 및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

- 성명재 등(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주 수요 탄력성은 약 0.1로 매우 비탄력적이고 맥주(0.8)와 위스키(1.6)는 수요가 탄력적
 - 소주의 경우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탄력성이 낮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에서는 소주 수요도 탄력적일 가능성
 - 또한 음주의 습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낮게 나타

나기 마련인데 이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시사성을 찾기 어려운 형편

- 미국의 경우 맥주 0.3, 포도주 1.0 그리고 증류주 1.5에 상당한 탄력성을 많은 연구에서 이용
 - 그러나 개인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각각 0.2, 0.6, 0.4로 주류의 수요 탄력성이 낮은 편
 - 7개 선진국의 평균은 맥주 0.4, 포도주 0.7, 증류주 1.0으로 추정
 - 그러나 대부분 연구는 단기 수요 탄력성을 추정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미국 주류소비의 장기 탄력성이 단기 보다 40% 정도 높게 분석

- 특히 음주가 습관성 혹은 중독성이 있는 제품임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주류가격이 소비량과 소비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
 - 17~27세 미국 청년의 경우 중독성을 무시한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약 0.3에 불과
 - 하지만 중독성을 고려한 단기 탄력성은 0.4 그리고 장기 탄력성은 0.7로 장기 탄력성이 중독성을 무시한 탄력성의 2배 이상 높게 추정
 - 이는 기존의 연구가 세율인상효과를 상당히 과소 평가 하였음을 의미

- 즉, 합리적 기대에 근거하여 미래 비용을 감안하는 소비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주세율 인상으로 당장의 소비양상을 크게 바꿀 수 없더라도
 - 영구적 가격인상은 누적 효과를 유발하여 주류 소비량을 줄이고 바람직한 소비행태(habit forming)를 유도할 수 있고
 - 이는 특히 음주습관이 아직 고착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
 - 또한 관련 연구를 집약해볼 때 주류가격 1% 인상시 교통사고가 평균 0.5~1.0%, 청소년은 0.7~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Kenkel, 1993)

- 이외 알콜 의존적 음주자의 경우 일반 음주자에 비하여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²⁶ 아직 없는 상황
 -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알콜 남용자의 음주량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육박

하고 평균적인 수요 탄력성이 0.7에 달하는 상황에서 알콜 남용자의 가격 탄력성은 영에 가까울 수는 없다는 의견

나. 주종별 세금부담: 국제비교

- 세계 각국의 주종별 소매가격 대비 주세 비중을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특히 요르단은 모든 주종의 세금이 소매가격의 200%²⁷⁾
 - 평균적으로 맥주는 소매가격의 약 24%, 포도주 23% 그리고 증류주 41%가 세금
 - 이외 아이스랜드에서 맥주, 포도주, 증류주에 부과되는 주세 비중은 각각 64%, 58%, 80%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
 - 일본의 경우 소매가격에 비하여 맥주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 46.5%이고 증류주는 23%로 우리보다 낮은 편

 - 유럽 국가 평균은 약 맥주 18%, 포도주 14%, 증류주 41%가 세금
 - 증류주를 제외한 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전술한대로 포도주 등에 비과세 혹은 저율 과세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때문
 - 그러나 유럽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이 19.2%에 이르러 이를 포함하면 맥주 37%, 포도주는 33%, 증류주는 60%에 상당
 - 또한 포도주에 과세하는 유럽 국가를 기준하면 평균 세부담은 이보다 증대
-
-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가격 대비 교육세를 포함한 주세 비중을 보면 소주 32%, 맥주 33% 포도주 26% 그리고 위스키는 34%²⁸⁾

27) 소매가격(off-premise sales price)으로 도매가격과 이윤 및 기타 비용 포함하며 주종별 제품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대표적 제품이거나 이들 제품의 지역 상품(local version)

28) 소매가격은 소주(360ml) 1100원, 맥주²⁷⁾(500ml) 1500원 포도주(750ml) 5,000원 그리고 위스키(500ml) 28,000원(출고가격 대비 유통마진 28%) 기준으로 교육세 포함 주세 부담(부가가치세 제외)은 소주 352원(출고가격의 93.6%), 맥주 493원(117%), 포도주 1,286원(33%), 위스키 9,617원(93.6%)으로 계산

- 따라서 주세(교육세 포함)만을 보면 소매가격에 비하여 맥주와 포도주의 세금 부담은 북유럽과 인접 국가 수준이며 증류주의 세금 비중은 낮은 편

<표 IV-2> 소매가격 대비 주세부담율: 국제비교

	맥주	포도주	증류주	무가가치세 세율
대한민국	33	26	34(32) ¹⁾	10
일본	46.50	-	22.80	5
미국	-	-	-	8
뉴질랜드	10.00	15.00	38.00	12.5
호주	24.00	25.00	50.00	10.0
중국	8.00	10.00	25.00	17.0
인도	12.10	-	40.60	-
프랑스	8.80	3.20	33.20	16.9
독일	6.60	0.00	13.78	16.0
덴마크	34.20	17.60	41.50	25.0
핀란드	38.00	36.00	67.00	22.0
헝가리	20.00	40.00	27.00	30.0
아일랜드	64.00	58.00	80.00	24.5
아일랜드	20.40	22.50	41.30	21.0
이탈리아	11.0	0.00	20.00	20.0
네덜란드	20.00	9.80	45.80	19.0
폴란드	22.00	14.00	57.00	22.0
슬로바키아	7.50	25.00	35.00	23.00
스페인	6.18	0.00	22.25	16.0
스웨덴	25.90	33.80	67.10	25.0
불가리아	5.80	9.40	27.70	20.0
라트비아	4.40	16.90	44.20	20.0
러시아	4.00	3.00	35.00	20.0
칠레	15.00	15.00	47.00	18.0
아르헨티나	8.00	20.00	20.00	-
멕시코	25.00	30.00	60.00	-
요르단	200.0	200.0	200.0	13.0

주: 무가가치세를 제외한 주세와 교육세²⁸ 비중으로 괄호 안은 소주(환산방식은 각주 참조)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2004

-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소주와 맥주 공히 39%, 포도주 36% 위스키 41%에 상당
 - 따라서 맥주와 포도주 세부담은 포도주를 비과세하는 국가를 포함한 유럽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증류주 세부담은 오히려 약 20%p 정도 낮은 편

- 한편 소득(1인당 GDP) 대비 주종별 가격 지표를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90~104개국 가운데 맥주 1.6(40위), 포도주 2.0(20위) 그리고 증류주 45.5(75위): 증류주는 소주가 아닌 위스키를 의미하고 순위는 하위일수록 비싼 편
 - 전체 평균(중간값)은 맥주 8.1(3.5), 포도주 33(8.7), 증류주 39.2(13.2)이고 유럽 평균은 각각 2.1, 8.4, 14.7

- 순위를 기준하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 맥주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고 포도주는 비싼 편이며 위스키는 매우 비싼 편
 - 소득에 비하여 우리나라 주류가격은 선진국 보다 비싼 편인데 그러나 전술한대로 소매가격 대비 세부담이 유럽국가와 유사함을 상기하면 이는 세금 보다는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 즉, 후진국일수록 토속주를 제외한 맥주, 포도주 그리고 위스키 등 일반 주류가 고급제품으로 치부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대비 주류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

- 한편 소주(750ml)의 경우 달러가격이 1.6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1.7
 - 따라서 소주가격은 소득 대비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룩셈부르크와 같고 미국(1.8)이나 독일(2.2)보다 저렴
 - 1인당 음주량이 가장 많은 룩셈부르크는 소득 대비 맥주가격(0.2)과 증류주 가격(1.7) 이 전체 국가에서 가장 낮은 1위이고 포도주(1.5)만 12위
 - 결국 소득 대비 저렴한 가격²⁹이 음주 소비를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요인

<표 IV-3> 주종별 소매가격: 국제비교(달러가격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달러)							
	맥주(500ml)		포도주(750ml)		증류주(750ml)			
	달러가격	GDP 대비	콜라 대비	달러가격	GDP 대비	달러가격	GDP 대비	
평균		8.1			33.0		39.2	
중간값		3.5			8.7		13.2	
유럽국가 평균		2.1			8.4		14.7	
대한민국	1.50	1.61 (40)	3.00	1.90	2.03 (20)	42.50	45.52 (75)	
일본	2.02	0.64 (15)	1.54	-	-	12.90	4.06 (8)	
미국	0.74	0.21 (2)	1.00	2.99	0.85 (2)	-	1.82 (2)	
캐나다	0.89	0.37 (10)	3.02	3.91	1.62 (15)	13.89	5.75 (18)	
뉴질랜드	1.22	0.73 (22)	1.47	5.55	3.31 (30)	11.10	6.62 (19)	
호주	1.29	0.64 (16)	0.61	5.59	2.80 (28)	13.98	7.01 (20)	
중국	0.60	6.63 (59)	1.25	2.42	26.52 (69)	2.42	26.52 (64)	
태국	0.64	3.43 (52)	2.78	9.83	52.89 (79)	4.13	22.21 (59)	
인도	0.68	15.34 (87)	1.32	6.21	139.1 (91)	2.48	55.62 (79)	
인도네시아	0.80	9.98 (77)	1.53	0.94	11.68 (54)	5.30	65.86 (85)	
영국	2.61	1.00 (26)	-	5.51	2.12 (21)	18.93	7.27 (21)	
프랑스	0.66	0.28 (5)	1.81	2.25	0.95 (3)	11.61	4.90 (11)	
독일	0.79	0.32 (8)	1.60	2.95	1.19 (4)	5.32	2.15 (3)	
오스트리아	0.66	0.26 (4)	1.34	3.03	1.19 (5)	6.49	2.54 (5)	
체코	0.22	0.33 (8)	0.93	1.18	1.78 (17)	3.39	5.12 (12)	
덴마크	1.01	0.30 (7)	0.89	3.98	1.20 (6)	18.49	5.55 (16)	
핀란드	1.85	0.71 (21)	2.19	4.92	1.89 (18)	21.20	8.13 (25)	
헝가리	0.41	0.67 (18)	0.67	1.63	2.68 (26)	6.52	10.70 (36)	
아이슬랜드	2.27	0.76 (23)	1.43	15.86	5.32 (35)	29.73	9.97 (31)	
아일랜드	2.07	0.70 (20)	1.75	8.93	3.00 (29)	13.81	4.64 (10)	
이탈리아	1.64	0.79 (24)	3.88	2.95	1.42 (11)	15.25	7.34 (23)	
룩셈부르크	0.89	0.19 (1)	2.25	6.87	1.46 (12)	7.78	1.65 (1)	
네덜란드	0.59	0.22 (3)	1.50	4.53	1.72 (16)	8.47	3.22 (7)	
노르웨이	2.53	0.57 (14)	3.47	9.99	2.24 (22)	37.25	8.35 (26)	
폴란드	0.50	1.07 (28)	1.00	1.86	4.02 (33)	8.18	17.67 (51)	
포르투갈	0.52	0.45 (12)	0.87	1.48	1.27 (8)	4.92	4.23 (9)	
슬로바키아	0.47	1.09 (30)	1.00	2.54	5.84 (39)	5.33	12.26 (42)	
스페인	0.67	0.41 (11)	2.00	0.76	0.46 (1)	9.10	5.53 (15)	
스웨덴	1.29	0.49 (13)	2.05	3.90	1.48 (13)	22.95	8.72 (22)	
스위스	1.06	0.28 (6)	2.29	5.29	1.40 (9)	8.93	2.36 (4)	
불가리아	0.21	1.17 (32)	0.91	1.20	6.85 (44)	1.91	10.85 (38)	
에스토니아	0.56	1.34 (34)	1.13	3.75	8.92 (49)	5.15	12.26 (41)	
루마니아	0.30	1.94 (44)	0.67	1.50	9.71 (51)	1.13	7.28 (22)	
러시아	0.47	2.41 (46)	1.58	2.34	12.05(55)	2.81	14.45 (48)	
라트비아	0.56	1.70 (50)	1.89	2.22	6.69 (43)	6.20	18.67 (53)	
리투아니아	0.42	1.16 (31)	3.75	2.72	7.39 (45)	4.90	13.33 (46)	
브라질	0.35	1.51 (39)	2.26	1.25	5.35 (37)	2.21	9.42 (30)	
칠레	0.40	1.08 (29)	1.49	0.96	2.60 (23)	1.96	5.28 (13)	
아르헨티나	0.65	3.17 (50)	3.29	0.31	1.52 (14)	4.08	20.01 (56)	
멕시코	0.81	1.47 (38) ³⁰	2.13	4.47	8.11 (47)	12.47	22.63 (61)	
대상국가수	108	104	108	108	95	108	90	

주: 1. 달러가격은 2002년 10월 31일 기준 환율 적용 2. GDP 비율은 주종별 가격을 1인당 GDP로 나눈 수치를 10,000으로 곱한 것임(각국 화폐 기준) 3. 괄호 안은 순위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2004

- 러시아, 태국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 증류주 소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도 나름대로 서민주라고 지칭되는 고유 주종이 있지만
 - 이들 토속주와 유사한 유명 브랜드 주류와 가격을 비교하면 토속주 가격이 3~5배 저렴한데 비하여
 - 우리나라 소주는 위스키 가격에 비하여 25배 이상 저렴

<표 IV-4> 국가별 고유 주류와 유사 주종의 가격비교

(단위: 도수, 달러)					
	주종 이름	분류	알콜도수	달러가격	유사주종 가격
대한민국	Soju	증류주	22	1.60	42.50
브라질	Pinga	증류주	39	0.69	2.21
칠레	Pisco	증류주	35	2.46	1.96
중국	Paddywine	증류주	35~45	0.72	2.42
아이스랜드	Tindavodka	증류주	37.5	26.6	29.73
인도	Arrack	증류주	33.3	1.55	2.48
러시아	Samogon	증류주	50	0.94	2.81
슬로바키아	Slivovica	증류주	50	3.56	5.33
태국	Clear liquor	증류주	28	2.46	4.13
우루과이	Cana	증류주	38	2.04	3.56
중국	Rice wine	포도주	12~18	0.36	2.42
일본	Sake	포도주	15	6.09	1.31
아르헨티나	-	맥주	7	0.25	0.65
볼리비아	Chica	맥주	5~7	0.48	1.04

주: 맥주는 500ml, 증류주와 포도주는 750ml 기준임.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2004

다. 주세의 과세방식

1) 종량세 · 종가세의 장단점

- 과세방식에 있어서 종가세와 종량세 혹은 이를 혼합한 과세가 가능
 - 종가세의 경우 가격에 비례하고 주종간 상대가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가 어렵고 저가품이 유리
 - 반면 종량세는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충실하고 저가품에 대한 종과세로 제품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주종간 가격왜곡과 함께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여 외부불경제의 교정과 세수확보가 어려운 단점

<표 IV-5> 종가세와 종량세의 특성과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종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이 제품가격(품질)에 비례: 세수가 물가상승에 비례 ▷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 ▷ 제품간의 상대가격 유지 ▷ 과세표준 방식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특성에 따른 과세가 불리 ▷ 저가품(덤핑제품)이 유리: 제품 고급화에 장애 ▷ 가격조작 가능성 ▷ 가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환율과 국제가격에 민감
종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특성(알콜도수)에 따른 과세 ▷ 과세행정이 간편 ▷ 탄력운용시 일정 세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 ▷ 고가품이 유리 ▷ 경직 운용시 실질세수 감소 ▷ 수입품에 비차별적

- 따라서 주세의 경우 종가세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
 - 이로 인하여 증류주인 소주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고 저가주의 시장 침투가 우려되지만
 - 종량세 체제에서는 물가상승³²⁾으로 주세의 실질 세부담이 많이 감소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청소년 음주를 비롯한 음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선진국 경험을 참조

2) 종량세의 문제점: 실질 세부담의 지속적인 감소

- 미국 연방세의 경우 1991년 약 50년만에서 처음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세부담이 1951년에 비하여 약 20%에 불과²⁹⁾
 - 또한 연방세 세율이 인상된 1991년 이후에도 물가상승으로 실질세율이 평균 29% 감소
 - 맥주의 경우 2001년 당시 세율이 1.07달러/갤런인데 이는 1991년 금액의 78%에 불과하며 포도주(18달러/배럴)와 증류주(13.5달러/proof 갤런)도 마찬가지

<표 IV-6> 미국 연방정부 주세율과 실질 세부담(1992~2001)						
	맥주(1.07\$/갤런)		포도주(18\$/배럴)		증류주(13.5\$/proof 갤런)	
	실질 부담	물가연동	실질 부담	물가연동	실질 부담	물가연동
1992	1.04	1.10	17.47	18.54	13.11	13.91
2001	0.83	1.38	14.0	23.14	10.50	17.36

자료: Increasing alcohol taxes to fund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youth-related alcohol problems, CSPI(www.cspinet.or/booze).

- 이에 따라 미국 국립학술원은 2003년 청소년 음주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세율 특히, 맥주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주세를 물가와 연동하여 과세하도록 미국 의회에 제안
 - 또한 의회예산국(CBO)³⁰⁾도 2005년 주세율을 인상하여 모든 주종에 대하여 동일세율 16달러/proof 갤런(25 /ounce)을 적용할 것을 제안

- 마찬가지로 미국 지방세에서도 간헐적인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1966~2001년 사이에
 - 실질세율은 맥주가 58%, 포도주는 62% 그리고 증류주는 67% 감소

29) 맥주가격은 배럴당 9달러에서 18달러³⁾ 증류주는 proof 갤런당 10.5 달러에서 13.5 달러 그리고 포도주는 갤런당 17센트에서 1.07달러로 인상

30) 의회예산국은 이 경우 2006년 한 해에 45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고 예상(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dget Options for Congress」, 2005. 2.)

<표 IV-7> 미국 주정부 평균 주세율과 실질 세부담(1966~2001)

	세율				실질세율의 변화
	평균세율 1966	평균세율 2001	세율 중간세율 2001	실질세율 (1966 달러)	
맥주	0.12	0.24	0.19	0.05	-58%
포도주	0.37	0.74	0.60	0.14	-62%
증류주	2.03	3.62	3.30	0.68	-67%

자료: Increasing alcohol taxes to fund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youth-related alcohol problems, CSPI(www.cspinet.or/booze).

- 이처럼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세부담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주세의 외부효과 교정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
 - 영국에서도 3~4년에 걸친 주기적인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1985~2000년 사이에 주종별 실질 세부담이 대략 맥주 20%, 포도주 11% 그리고 증류주는 30% 감소

<표 IV-8> 영국 주세율의 실질 세부담(2000년 3월=10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0/1985
맥주	32.1	27.6	26.3	25.6	25.0	26.0	80.1
포도주	131.1	112.4	115.6	114.5	112.0	116.0	88.5
증류주	783.0	658.1	606.9	560.3	548.0	548.0	70.0
담배	144.9	144.4	199.7	235.2	247.4	272.0	187.7

자료: IAS, 「Alcohol and the Law」, IAS Fact Sheet

라. 최적세율이론과 주세율

1) 최적세율: 이론적 배경

- 주류 소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적 과세가 효율적
 - 다만 적정한 음주는 흡연 등 다른 제품과 달리 폐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
 - 물론 알콜 남용과 정상 음주를 따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최선의 피구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정상적 음주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로 발생하는 왜곡효과와 알콜 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교정하는 효과를 함께 감안, 균형을 이루는 세율 결정이 필요
 - 이외 알콜 중독자의 경우 일반적인 남용이 아니라 병적인 상태로 본다면 소비행위 자체가 효용이 아닌 비용을 유발³¹⁾

- 이 경우 최적 세율은 알콜 남용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 일반 음주자, 알콜 남용자와 알콜 중독자의 수요 탄력성 그리고 소비량에 따라 변화
 - 미국의 경우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알콜 1리터당 최적세율을 실제 주세부담의 2.1배로 추산(세전 판매가격 대비 51%)³²⁾
 - 알콜 중독자도 함께 고려하면 최적 세율은 87~306%까지 가능

- ~~□ 한편 주세율 체계에 있어서 알콜도수에 의한 차등과세는 알콜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
 - 이외 음주자가 아닌 알콜 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장점³³⁾

31) 중독성이 있는 제품을 소비할 때 불완전 정보가 있으면 이러한 비효율성이 발생(Becker and Murphy, 1987)

32) Thomas F Pogue and Larry G. Sgontz, Taxing to Control Social Costs: The Case of Alcohol ,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89 Vol. 79 No. 1, pp. 235~253

- 그러나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알콜 음용량 이외에도 음주빈도, 폭음, 개인 성향, 음주시간과 장소 등 음주환경 및 주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
- 특히 개별 주종의 수요 탄력성과 주종간 대체관계가 최적세율에 영향
 - 한 예로 주종간 대체관계가 0이라면 적정 세율은 주종에 따라 차이가 없고 따라서 알콜도수에 따른 단순 차등과세가 바람직³⁴⁾
 - 그러나 주종간 대체탄력성이 증가하면 최적 세율과 주종간 세율격차도 함께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 알콜 1리터당 세율에서 맥주는 증류주의 1.25~1.43배, 포도주는 1.08~1.22배(Saffer and Chaloupka)³⁵⁾
- 따라서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필요하지만 알콜도수에 정확히 일치하는 세율 체계는 이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편
 - 그러므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충실하되 저도주의 경우 알콜도수에 비하여 세금이 더 중과하는 원칙이 필요
 -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맥주나 포도주에 대하여 증류주의 약 40~50% 수준으로 과세
- 마지막으로 음주의 실질가격은 화폐비용 이외 주류구입의 용이성,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 음주 관련 질환에 걸릴 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잠재적 비용 등이 결정함을 유의

2) 최적세율에 근거한 주세율 추정

- 본고에서는 단순한 모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적 세율을 추정³⁶⁾

33) 즉, 주세는 기본적으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닌 그 가능성에 대한 과세

34) 이 경우 최적세율은 1991년 기준으로 알콜 1리터당 70달러(Henry Saffer and Frank Chaloupka, Alcohol Tax Equalization and Social Costs, Eastern Economic Review, Vol 20, No 2, Winter 1994, pp. 33~43)

35) 또한 최적세율도 대체탄력성이 0일 때에 비하여 약 73~88달러(1.05~1.26배)까지 증가

36) Thomas F Pogue and Larry G. Sgontz(1989)

- 이를 위하여 앞서 제시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알콜 남용자(알콜 중독자)의 비중과 소비량, 수요 탄력성 등에 대한 추정 자료를 이용
- 우선 음주의 사회적 비용(E)에서는 총비용의 29%와 44%를 근거로 알콜 1리터당 15,200원, 23,300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추정³⁷⁾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남용자 인구비중과 소비량은 각각 20%, 52.4%로 추정³⁸⁾
 - 우리나라의 경우 과음행위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저렴한 고도주 소비로 알콜을 남용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편³⁹⁾
 - 이외 '거의 매일' 음주하는 알콜 중독자 인구비중과 소비량은 각각 6.1%, 25.0%로 추정⁴⁰⁾
- 주종간 대체 탄력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기 가정에 따른 알콜 1리터당 최적 세율을 구하면
- 정상 음주자를 무시한 단순 피구세에서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15,200~23,300원으로 평균 세전가격 11,600원⁴¹⁾ 대비 130~200%
 - 따라서 알콜도수만 감안한 출고가격 대비 세율은 소주 약 330~510%, 맥주 80~120%, 포도주 30~50% 그리고 위스키는 30~45% 수준
 - 소주 세금은 위스키의 절반 이상(1,300원 대비 2,100원)이지만 소주는 알콜도수가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병당 세율이 위스키의 10배

- 두 번째로 주세가 정상 음주자의 소비를 왜곡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 평균세율은 100~170%이며

37) 한편 알콜 1리터당 주류의 평균가격(P)은 주류 소비량을 가중치로 하여 11,600원,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적 비용(A)은 37,700원으로 추정

38) 알콜 남용자와 중독자 인구비중과 소비량은 각각 <표 III-6>, <표 III-2> 그리고 <표 III-4>에 근거하여 추정

39) 미국의 경우 인구 10%가 음주 남용자로 전체 주류의 38%를 소비하고 또한 인구의 6%가 알콜 중독자로 30%를 소비한다고 추정. 이외 인구의 6.5%가 전체 주류의 50%를 소비한다는 주장도 제기(Cook and Moore, 1999, Pogue and Sgontz, 1989)

40)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콜 중독자를 약 221만 명(인구 6.8%)으로 추정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

41) 알콜 1리터당 가격으로 2003년 소비량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주종별 가격을 평균화

- 주종별로는 소주 260~440%, 맥주 60~110%, 포도주 25~40% 그리고 위스키는 25~45%
-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란 음주 남용자의 수요 탄력성이 정상 음주자보다 절반 정도 비탄력적이며 알콜 중독을 치유해야 할 병으로 간주

<표 IV-9> 알콜도수에 따른 주종별 최적 주세율(대체 탄력성=0)

			(단위: %)				
			평균	소주	맥주	포도주	위스키
사회적 비용=총 비용의 29%	단순	피구세	131	334	79	32	30
	알콜 중독 무시	$\epsilon=1$	68	174	41	17	15
		$\epsilon=\frac{1}{2}$	46	117	28	11	10
	알콜 중독 감안	$\epsilon=1$	234	598	141	58	53
$\epsilon=\frac{1}{2}$		103	263	62	25	23	
사회적 비용=총 비용의 44%	단순	피구세	200	511	121	49	46
	알콜 중독 무시	$\epsilon=1$	104	266	63	26	23
		$\epsilon=\frac{1}{2}$	70	179	43	15	17
	알콜 중독 감안	$\epsilon=1$	283	723	172	70	64
$\epsilon=\frac{1}{2}$		173	441	105	39	43	

주: 1. $\epsilon=\frac{1}{2}$ 는 알콜 남용자(중독자)의 수요 탄력성이 일반 음주자의 절반에 해당함을 의미
 3. 주종별로 알콜 1리터당 세금을 환산하고 이를 다시 주종별 출고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알콜 1리터는 소주와 포도주 12.1병, 맥주 45.5병, 위스키 7.1병에 해당) 2. 소주 출고가격 376원(360ml), 맥주 421원(500ml), 포도주 3,896원(750ml) 그리고 위스키 7,193원(350ml) 기준

- 한편 상기 논의는 주종간의 대체 탄력성을 무시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모든 주류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의 상황으로
 - 음주행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대체제품의 소비를 통하여 음주 남용을 지속할 수 있음을 명심
 - 미국의 경우 대체 탄력성을 고려하면 증류주 대비 맥주는 알콜도수만을 감안한 세율의 1.4배, 포도주는 1.2배 과세가 바람직
 - 또한 <표 II-2>에서 보듯이 포도주에 과세하는 유럽국가의 경우 증류주 대비 맥주와 포도주 세금은 43%로 단순 알콜도수에 기준한 세금 보다 맥주는 약 3.9배, 포도주는 1.4배 초과

- 따라서 실제로 바람직한 최적 세율은 '한 예로', 소주를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세율에서 맥주와 위스키는 1.4배, 포도주는 1.2배 부과함을 고려

- 이 경우 맥주는 85~155%, 포도주 30~50% 그리고 위스키는 35~65%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주 세율은 매우 높고 위스키 세율은 GATT 3조 2항(내국민대우 조항)에 어긋나는 문제점
- 어쨌든 알콜도수만을 정확히 반영하는 차등과세는 이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므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도입하되, 이에 대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
- 즉, 외부불경제와 함께 알콜의 습관성과 중독성, 집단적 음주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문화, 많은 청소년과 여성이 맥주로 음주를 시작하고 소주로 옮겨가는 현실과 함께
 - 특히 소주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할 때 여타 주류가 소주를 대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세율과 세율체계를 도입

2.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가. 주세율 체계의 개편 필요성

- 적정 수준의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의 촉매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는 권주, 순배, 연주, 폭주 등의 집단적 음주행태와 함께 음주와 그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선진국과 정반대의 음주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 이로 말미암아 개인은 그 스트레스로 육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음주운전과 난동, 각종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손상 등 피해 속출
- 이와 같은 음주 행태는 획일성³⁰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이외에도 알콜 농도는 높지만 가격이 저렴한 음주 환경이 일정 부분 기여
- 국민주 혹은 서민주에 대한 저율 과세로 저렴한 음주가 가능하고 이는

음주 강요, 과다 음주, 연주 그리고 폭주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도 주류를 애용하여 다시 서민주라는 미명을 얻는 악순환이 계속

-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 음주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다 음주도 증대되고 있어 작금의 왜곡된 음주문화가 지속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한 예로 여성의 음주비율은 지난 20년간 2배 증가하여 거의 50%에 이르고 청소년 음주율은 55%에 육박
 - 이들은 처음에는 맥주를 많이 음용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주 선호

- 이처럼 음주습관이 저도주에서 고도주로 발전하면서 음주자가 알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과음하는 인구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
 - 술을 거의 매일 음용하는 사람은 30대는 3.5%인 반면 50대 이상이 11~17%에 달하며
 - 음주시 소주 1병 이상 과음하는 인구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31%에서 41%로 증가하였고(맥주는 31%→38%) 소주 2병(맥주 8병) 음주자도 10%대
 - 여성의 경우 소주 1병(맥주 4병) 이상은 15%(21%)

- 그 결과 알콜 의존도를 보이는 인구비율은 20%를 상회하고 거의 매일 술을 먹는 인구도 약 6%에 달하는 지경
 -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바 한 예로 음주소란 단속이 연 74,000여 건에 이르고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는 약 2만 건 정도 줄었고 음주운전 단속은 약 3배 증가하여 연 49만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서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13%로 증대(사망·부상은 약 3%에서 15%로 5배 증대하여 2003년 각각 1,100명, 55,000명의 인명 손실)

- 주류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소주가 서민주이며 수요 탄력성이 낮아 주세율 정책으로는 그 폐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데 기반

- 그러나 탄력성이 낮은 이유는 소주가 가격이 워낙 저렴한데 기인하며 알콜 중독성을 감안하면 탄력성은 2배 이상 증대
 - 소주가 서민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고알콜주임에도 불구하고 생수가 격에 불과한 1,1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기형적 상황
 - 러시아, 슬로바키아, 중국, 태국, 칠레, 우루과이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유명 브랜드 증류주와 경쟁하는 민속주가 있으나 그 가격이 3~5배 정도 저렴한 반면 우리나라는 20배 이상 저렴
-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이 음주를 하고 이 가운데 약 30%가 저가의 소주를 음용,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는 상황
- 이는 결국 기성세대가 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된 음주문화를 후세대에게 그대로 전승하는 결과
 - 이에 비하면 음주의 중독성을 감안한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은 누적적인 효과를 나타내 아직 고착되지 않은 청소년의 음주습관에 큰 영향
- 따라서 주세율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개선하고 특히 청소년 음주를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존재
- 미국 연구에 의하면 주류가격 10% 인상시 음주운전이 약 8% 감소하고 범죄율은 1.3%, 유아학대는 2%, 가정폭력은 4% 감소⁴²⁾
 - 물론 주세율 정책 이외에도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처벌 등 전방위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선진형으로 선도할 필요

나.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 지금까지 국민주 혹은 서민주에 대한 세금이라는 국민정서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세율 정책은
- 음주 남용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⁴¹⁾고

42) Frank J. Chaloupka, Michael Grossman and Henry Saffer, The Effects of Prices on Alcohol Consumption and Alcohol Related Problems , Alcohol Research and Health Vol 26 No 2, 2002

- 그 결과 음주 인구의 확산과 과다 음주, 집단음주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악순환이 지속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
- 특히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음주행태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 모방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왜곡된 음주문화의 맥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긴급요
 - 이에 본고에서는 선진국형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세율 개편안을 제안
- 기본적으로 종가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주 등 증류주 주세율은 150%, 맥주 120%, 이외 포도주 등 기타 주류는 70% 그리고 탁주는 50%로 세율 인상
 - 다만 이와 같은 세율 인상이 주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세율 개편안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
- 목적세인 교육세는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일반 재원화하고 폐지가 바람직
 - 그 동안 주세 인상으로 교육세 부담이 자동적으로 증대되는 문제는 교육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세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함께 고려⁴³⁾
-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합리적 가정 아래 최적세율을 구하면 소주의 경우 300~400% 세율인상이 필요하나
 - 소주가 서민주라는 측면과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50%까지 인상
 - 비록 현행 세율의 2배이지만 금액으로는 424원(360ml 기준)에서 약 842원으로 인상되어 절대 금액으로는 약 520원 증가(제세 포함)
 - 위스키 등 증류주도 GATT 규정에 따라 소주세율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므로 150% 적용이 불가피

43)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교육제도 운영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재원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주세 인상을 이유로 교육제도 자동 인상하는 현행 세율체계는 개선이 필요

<표 IV-10>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주종	알콜도수	주세				교육세 ¹⁾
			현행세율	2006	2007	2008	
증류주	소주						
	- 증류식	40	72	90	120	150	45
	- 희석식	21~25	72	90	120	150	45
	위스키	40	72	90	120	150	45
	브랜드	40	72	90	120	150	45
	일반증류주	40	72	90	120	150	45
	리큐르	35	72	90	120	150	45
발효주	탁주	6	5	20	35	50	-
	약주	11	30	40	60	70	21
	청주	16	30	40	60	70	21
	과실주	12	30	40	60	70	21
	맥주	4~5	90	100	110	120	30
	기타주류						
	- 발효주		30	40	60	70	30
	- 기타 ¹⁾		72	90	120	150	45

주: 1) 교육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

□ 여타 주류의 경우 주종간 대체 가능성과 증류주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 맥주와 과실주 등의 경우 현행 세율보다 30~40% 높은 120%, 70%로 인상하고 탁주도 50% 세율을 적용
- 주세율 개편 목적이 음주의 외부불경제 해소에 있는 만큼 증류주 세율 인상시 음주 행태가 소주 등 증류주에서 다른 주종 특히 저가 제품으로 이전될 것을 감안

□ 이와 같은 주세율 인상으로 체세 포함 소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현행 30%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50%대로 인상될 전망

- 위스키의 경우 세 부담의 인상폭이 크지만 소매가격 비중은 50%대로 대다수 선진국의 60~80% 수준보다 낮은 편
- 또한 1인당 세부담은 포도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럽 국가 평균 세금의 30% 수준에서 향후에는 약 45%로 증대

- 이와 같은 세율 개편은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른 조정
 - 이론적으로도 알콜도수에 일치하는 차등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맥주와 포도주 등에 대하여 증류주 대비 약 30~40%대 수준으로 과세(알콜 기준)
 - 특히 맥주의 경우 비록 알콜도수는 낮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청소년 음주를 줄이기 위하여 진입료적 성격(entry fee)으로 이들이 애용하는 맥주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을 고려
 - 음주소비의 중독성과 합리적 기대가설을 고려하면 맥주에 대한 중과세는 맥주 이외에도 전반적인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

- 이외 포도주 등 과실주의 경우 현행 세율이 낮아 급격한 세율인상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70%로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90%까지 인상

다. 주세와 건강복지기금

- 최근 주세 인상시 발생하는 세수는 과도한 알콜 사용으로 발생하는 건강악화나 사고 혹은 피해 입는 상황을 고려,
 - 이로 말미암아 지출되는 의료비를 위하여 한 예로 건강복지기금 등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외부불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피구세적 주세의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존재
 - 특히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주세라면 주세 부과로서 원인자부담원칙이 이미 충족되었고 사용료 혹은 보험료적 성격을 완수
 - 세수를 알콜중독 등 과음자⁴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이는 오히려 음주남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하여 교정효과를 저해

- 또한 목적세는 예산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함을 명심
 - 특히 목적세는 한시적 성격을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문제

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 알콜 섭취량은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주 등 고도주 음용은 러시아, 라트비아 그리고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
 - 2003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성인이 연간 소주 68병, 맥주는 248병 소비

- 최근 20년간 전체 인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약 48%에서 64%로 약 16%p 증가하여 음주와 그 문화가 사회 저변에 크게 확산
 - 특히 여성 음주자는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거의 50%에 이르고 청소년 음주율은 2000년대에 들어와 약 32%에 55%로 크게 증대
 - 여성과 청소년은 처음에는 맥주를 많이 음용하지만 나이가 들고 음주에 익숙해지면서 소주를 선호하여 약 30% 이상이 소주 음용
 - 즐겨 마시는 술이 저도주에서 고도주로 옮겨가면서 알콜 의존과 중독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기 마련

- 특히 1999~2003년 사이에 음주성향을 보면 1회에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중은 31%에서 41%, 소주 2병 이상은 약 6%에서 10%로 크게 증가
 - 과음하는 여성의 비중도 약 7%에서 15%로 증가하였고 이는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비슷하게 증가(맥주 4병 이상 38%)
 - 동시에 술을 거의 매일 음용하는 사람은 30대는 3.5%인 반면 50대 이상이 11~17%에 달하여 음주의 중독성을 반증
 - 그 결과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WHO 기준의 알콜 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여성의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3%에서 11%로 증대
 - 이와 별도로 정부는 우리나라 총 알콜 중독자를 약 220만 명으로 추산

-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로 지난 몇 년간 음주자 비중이 33%에서 55%로 증가하였고 이46가운데 소주를 음용하는 비중은 약 30%
 - 청소년 시절 음주는 추후 알콜 의존과 사고·범죄 가능성을 약 3배 이상 증대하는 요인

- 한편 비정상적인 음주는 개인적 피해 이외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사고, 생산성 하락과 난동, 각종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 한 예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간질환과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자살율 이외에,
 - 우리나라 음주소란 단속은 연 7.4만 건에 이르고 3.1만 건의 음주 교통사고와 1,100명 사망 그리고 5.5만 명의 부상자를 초래
 - 특히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는 약 2만 건 정도 줄고 음주운전 단속은 연 49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와 사망·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배로 증가
 - 자동차 1만대 기준으로 교통사고·사망 등은 미국·일본의 2~4배이고 음주량이 세계 최고인 동부유럽 국가 수준

- 이러한 교통 관련 수치는 한 예이며 음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약 17조원(GDP 대비 0.7%),
 - 개인이 아닌 사회적 피해는 연 약 5~7조원으로 추산
 - 이러한 비용은 그러나 음주자 본인과 제3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 등 제반 간접비용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로 인한 다양한 손실은 무시한 수치

- 우리나라는 권주와 순배 혹은 회식과 접대 그리고 1,2,3차를 강조하는 집단적 그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음주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 그 대신 숙취 후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 음주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신 숙취 후 행위 혹은 그 결과에는 책임을 묻는 선진국과 정반대
 - 이러한 문화는 개인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고 획일성과 집단에 대한 예속화 그리고 같은 집단 이외 사회에 대해서는 무책임을 조장, 선진국 진입을 ⁻⁴⁷⁻제한하는 관습

- 이러한 음주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역사적·사회적 요인이 있겠으나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 저렴한 가격과 용이한 접근성 등의 손쉬운 음주환경이 일부분 작용
 - 즉, 저율 과세로 고알콜주이지만 저렴한 소주가 서민주로 자리 잡으면서 집단적이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 음주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주적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악순환
 - 위스키와 유사한 고유의 국민주가 상당수 국가에 있지만 위스키와 비교하면 그 가격은 3~5배 정도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20배 이상 저렴

- 주세율 정책에서 서민이 즐겨 마시는 술이라는 국민적 정서와 사교의 촉매제적 역할 등 음주의 순기능도 물론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 고알콜주인 소주가 제세 포함 병당(360ml) 424원에 불과한 세율로 인하여 생수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은 왜곡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 특히 청소년 음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주를 위시한 주류가 저가에 판매됨으로써 알콜 의존을 비롯한 부작용이 크게 악화될 것에 대비한 정책이 긴급

- 요컨대, 기성세대의 세부담이 증대되는 것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왜곡된 음주문화를 후세대에게 그대로 계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
 -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음주습관이 아직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가격에 민감하여 주세율 정책이 효과적

- 이에 본고에서는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150%를 위시하여 맥주 120%, 과실주 등 70% 그리고 탁주 50%의 주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 이러한 세율 수준은 최적세율이론에 따라 주세로 인하여 정상 음주자의 소비도 왜곡되는 것을 고려한 수치
 - 교육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운영으로 세부담을 완화

- 장기적으로 주류의 대체 탄력성 특히 저가 제품으로의 소비전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감축을 위한 주세율 개편에서 전반적인 세율인상이 불가피
 - 알콜도수에 따른 차등과세 원칙이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이에 일치하는 세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적 관례도 맥주와 포도주에 대하여 증류주 세부담의 30~40% 선에서 과세
 - 즉,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유지하되 소주와 여타 주류 사이의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세율 체계를 구상

-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맥주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경향
 - 음주의 중독성과 합리적 기대에 의한 음주행위를 고려하면 맥주 등 저도주에 대한 중과세는 청소년과 여성 등 음주를 시작한 사람의 음주행위를 제어함으로써 맥주 이외 음주의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데 큰 효과

-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세율만을 고려하면 소주에 대하여 대체로 300~400% 세율 부과가 필요하나
 - 소주가 서민주이며 주세율 정책 이외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여지를 고려, 150%를 제안

- 소주의 경우 현행 424원(360ml) 보다 약 2배 정도로 세금이 증가하며 맥주는 584원(500ml)에서 약 1.3배로 증대
 - 따라서 소주와 맥주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위스키 등 기타 주류의 세부담 증대가 불가피

- 제세 포함 소매가격 대비 세금은 현행 30%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50%대로 인상될 전망
 - 위스키의 경우 세 부담의 ⁻⁴⁹⁻인상폭이 크지만 소매가격 비중은 50%대로 대다수 선진국의 60~80% 수준보다 낮은 편

- 또한 1인당 세부담은 포도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럽 국가 평균 세금의 30% 수준에서 향후에는 약 45%로 증대
- 한편 주세의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종가세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
- 산업적 중립성과 수직적 형평성 등 종가세의 장점 이외 종량세는 선진국 경험에서 보듯이 주세율정책 본연의 기능인 외부불경제 감축에서 취약점이 노출
 - 한 예로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1991년 연방세의 실질 세부담이 1951년에 비하여 21%에 불과하고 2001년에는 실질 세부담이 1991년 세율 인상 당시의 78%
 -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종량세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검토 중
- 이외 주세 세수의 가치 건강복지기금 편입은 주세의 원인자 부담원칙 혹은 외부불경제 감축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요컨대 청소년과 여성 음주 증가와 과음행태의 심화, 심각하게 왜곡된 우리나라 음주문화 그리고 국제적 관례와 최근 동향 등을 고려할 때
- 음주의 외부불경제를 감축하기 위한 주세율 정책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 음주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절도 있는 음주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희생이 불가피한 시점
 - 물론 화폐비용 이외에도 주류구입의 용이성,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 등 음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등이 음주행태를 결정함에 유의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 접근도 함께 고려